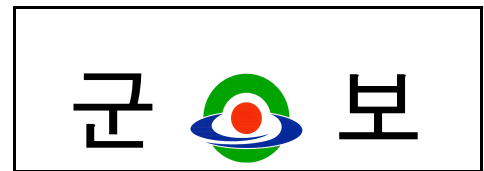


# 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150호 2019. 2. 25.(월)

| 선<br>람 | 기 관 의 장 |
|--------|---------|
|        |         |

## 공 고

○ 예천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(예천군 공고 제2019-267호)

| 회<br>람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------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
|------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

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(전화 650-6066)

## 예천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·운영 조례안 입법예고

「예천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·운영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19년 2월 25일

예 천 군 수

### 1. 제정이유

-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예천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·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

### 2. 주요내용

가.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및 기능(안 제6조 및 안 제7조)

-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권한과 업무를 규정

나.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관리·운영(안 제8조)

- 관리·운영계획의 수립과 전문기관에 업무 위탁 근거 마련

다. 스마트도시사업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(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)

- 스마트도시사업 협의회의 설치, 기능, 구성, 운영, 위원의 임기,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
-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도시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며, 위촉직은 조례안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함

### 3. 제정조례안

- 붙임과 같음

### 4. 의견제출

- 이 조례 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(도시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의견제출처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팩스, 직접방문 등
  - 주 소 : 예천군 호명면 행복7길 25-4,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(2층)
  - 전 화 : 054-650-8975
  - 팩 스 : 054-650-8979
-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(<http://ycg.kr>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례명 : 예천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·운영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| 조례안 내용 | 의 건 | 비 고 |
|--------|-----|-----|
|        |     |     |

# 예천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·운영 조례안

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·운영을 위하여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를 따른다.

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3조와 예천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서 추진 및 관리·운영하는 스마트도시 사업으로 한다.

제4조(책무) 예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관리·운영과 스마트도시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5조(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) 군수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·운영을 위하여 법 제4조의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
## 제2장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

제6조(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) ① 군수는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·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(이하 “통합운영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통합운영센터는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관리·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하되,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, 호환성,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스마트도시 인근에 위치하여야 한다.

제7조(통합운영센터의 기능) 통합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·운영
2. 스마트도시 정보수집, 가공처리, 서비스 제공
3. 통합운영센터의 정보통신 장비, 전기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물 관리·운영
4. 통합운영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
5. 경찰서, 교육지원청, 소방서 등 각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
6. 스마트도시 시설물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·운영

제8조(통합운영센터의 관리·운영)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

반시설의 관리·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관리·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·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
2.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·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
3.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규모 등에 따른 관리·운영비 분담에 대한 안  
동시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

③ 군수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전문 인력·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### 제3장 스마트도시사업 협의회

제9조(스마트도시사업 협의회 설치) 군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의 추진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스마트도시사업 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10조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 한다.

- ①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

-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
- 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
- ④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
- ⑤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**제11조(구성)**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도시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,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.

1. 경찰서, 교육청, 소방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(부서장급)
2. 예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
3.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
4.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시행자
5.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
6.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
7.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
8. 그 밖의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
**제12조(운영)**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.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하고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고,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담당자로 한다.
-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**제13조(임기)**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**제14조(해촉)**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회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-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- ②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- ③ 직무태만·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④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- ⑤ 그 밖의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

제15조(실무협의회)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실무담당자와 관계 기관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제16조(수당 등)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예산균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예천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·운영 조례안

## 비용추계서

### I. 비용추계 요약

#### 1. 재정수반요인

가. 내용 :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(이하 “통합운영센터”) 정보통신 장비 유지·보수비 및 시설물 관리·운영비 등

나. 관련조문 : 예천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·운영 조례안 제6조

#### 2. 비용추계의 전제

○ 통합운영센터 정보통신 장비 유지·보수비 및 시설물 관리·운영비는 안동시와 협의하여 분담

- 정보통신 장비 유지·보수비 분담비율 : 예천군 50%, 안동시 50%
- 시설물 관리·운영비 분담비율 : 예천군 65%, 안동시 35%

○ 분담비율은 담당부서에서 안동시와 매년 공문으로 협의

#### 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| 구분 \ 연도     |        | 1차년도<br>(2019) | 2차년도<br>(2020) | 3차년도<br>(2021) | 4차년도<br>(2022) | 5차년도<br>(2023) | 합계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세입          | ○안동분담금 | 371,936        | 379,003        | 386,204        | 393,542        | 401,019        | 1,931,704   |
|             | 소계(a)  | 371,936        | 379,003        | 386,204        | 393,542        | 401,019        | 1,931,704   |
| 세출          | ○센터운영비 | 775,530        | 790,265        | 805,280        | 820,580        | 836,171        | 4,027,826   |
|             | 소계(b)  | 775,530        | 790,265        | 805,280        | 820,580        | 836,171        | 4,027,826   |
| □ 총 비용(a-b) |        | △ 403,594      | △ 411,262      | △ 419,076      | △ 427,039      | △ 435,152      | △ 2,096,123 |

#### 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천원)

| 구분 \ 연도 |      | 1차년도    | 2차년도    | 3차년도    | 4차년도    | 5차년도    | 합계        |
|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
| 국비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|
| 도비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|
| 군비      | 일반회계 | 403,594 | 411,262 | 419,076 | 427,039 | 435,152 | 2,096,123 |
|         | 특별회계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|
|         | 기금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|
| 민간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|
| 기타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|
| 합계      |      | 403,594 | 411,262 | 419,076 | 427,039 | 435,152 | 2,096,123 |

#### 5. 부대의견

6. 작성자 : 도시과 시설5급 강 성 철

##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| 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예산액(원)      | 산출내역(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분담비율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775,530,000 | 예천분담금: 403,594,000원<br>(안동분담금: 371,936,000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정보 통신 장비<br>유지·보수비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670,000,000 | - 시스템 총 구축비 = 9,192,022,305원<br>- 각 시스템(156종) 별 유지보수료 요율 적용<br>(H/W 7%, S/W 10% 등) | 예천 50,<br>안동 50 |
| 통합<br>운영<br>센터<br>관<br>리·<br>운영<br>비 | 공공요금             | 73,200,000  | - 6,100,000원 × 12월 = 73,200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예천 65,<br>안동 35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승강기관리<br>용역      | 3,600,000   | - 300,000원 × 12월 = 3,600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방시설점<br>검 용역    | 3,600,000   | - 300,000원 × 12월 = 3,600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기안전관<br>리 용역    | 7,200,000   | - 600,000원 × 12월 = 7,200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청소 용역            | 7,200,000   | - 600,000원 × 12월 = 7,200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방범관리비            | 1,980,000   | - 165,000원 × 12월 = 1,980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설물 유지·<br>보수비 등 | 8,750,000   | - 8,750,000원 × 1년 = 8,750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
<참고자료>

## 관 계 법 령

### 【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】

제19조(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 등)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반시설의 관리청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.

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설과 관계되는 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시설들을 통합적으로 관리·운영할 수 있다.

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전문 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 계획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수립할 수 있다.

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**제24조(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)** ①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

1.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
2.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
3.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
2.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
3. 사업시행자
4.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
5.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
6.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

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 **【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】**

**제22조(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 등)**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(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. 이하 "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관리·운영하여야 한다.

1.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
2.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·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

## 관한 사항

### 3.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

② 법 제19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"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
2.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
3.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제2조제4호의 정보통신공사업자
4. 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 제2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자

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이 정하여 공고한다.

④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이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수료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⑤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위탁받은 업무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.

⑥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업무의 위탁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

**제28조(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협의사항)**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
2.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